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건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7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신건택·이명희·박성숙
우미경·신언근·이숙자
황준환·김진철·이신혜
박운기·박양숙·오경환
김동윤·박진형·권미경
의원(15명)

1. 제안이유

-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권익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임무로 되고 있음. 이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사회의 빈부 격차가 줄고, 시민들이 국가와 사회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 단체 등은 중요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협력적 관계가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3조제1항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이정수 예산분석관(02-3705-1281)

[붙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2015년 사업 예산 : 3,606,000천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비 : 2,106,000천원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비 : 1,500,000천원
- 사업시작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1995년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2013년
- 지원대상 :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지원방법
 - 2015년도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세부 사업별 청구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예산 세부 내역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비 2,106,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 계		2,106,000	
노동조합 교육 사업	소계	335,000	
	숙박비	76,800	40×1박×80명×24회=76,800
	식비	96,000	50(1박2일)×80명×24회=96,000
	강당사용료	14,400	300×2일×24회=14,400
	강사비	14,400	300×2명×24회=14,400
	교통비	48,000	500×2일×2대×24회=48,000
	인쇄비	14,400	600×24회=14,400
	현수막	1,200	50×24회=1,200
	공동의류	67,200	35×80명×24회=67,200
	기타경비	2,600	문구대 외
법률지원 사업	소계	89,000	
	현장방문 교육비	8,400	강사비 300×24회=7,200 출장경비 50×24회=1,200
	노동법강좌 교육비	13,300	강사비 300×24회=7,200 교재비 10×350권=3,500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교육평가회 6회 2,500 현수막 50×2회=100
	노무사 인력 배치비	25,000	100×250=25,000
	현장, 취약 계층 천막상당소 운영비	17,380	-신도림전철역 노무사 상담비 157×27회×2명=8,478 -영등포구청전철역 노무사 상담비 157×27회×2명=8,478 -장비배치424
	노동법률지원사업 워크숍	4,000	숙박비 20×15명×2회=600 식비 50(1박2일)×15명×2회=1,500 교재비 10×20권×2회=400 차량비 400×2회=800 기타경비 700
	상담사례집 발간	7,000	10×700권=7,000
	노동법률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비	4,920	리플렛 제작비 1,500원×500부×4회=3,000 포스터 제작비 1,920원×500부×2회=1,920
	공무지원 차량 대여	9,000	750원×12월=9,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소계	57,000	
	이벤트비	25,000	음향기기 설치비 외 5,000 가수 초청비(4명) 20,000
	인쇄비	3,500	포스터 제작비 2×1,000부=2,000 리플렛 제작비 1,500원×1,000부=1,500 천원
	홍보비	500	현수막 100×2개=200 광고비(노동전문일간지) 300
	장소대여비	1,000	장소(의자/천막/책상)대관료 주차비, 청소료
	참가품	21,500	21,500원×1,000명=21,500천원
	기타경비	5,500	장기경연 트로피 외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소계	60,000	
	숙박비	4,000	50×20실×2박×2회=4,000
	식비	22,400	20×7식×80명×2회=22,400
	교통비	12,600	서울-목호 왕복
	선박비	20,000	목호-울릉도-독도
	기타경비	1,000	보험료 외
국제교류및	소계	139,000	
	중국 연길조선족자치주총공회 방문 외 4개국 (각 5박6	25,000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ILO 총회참관	일, 5인)		
	항공료	20,000	800×5명×5회=20,000
	기타경비	5,000	보험료 외
	베트남 하노이노총 방한/러시아 모스크바노총 방한	26,000	
	숙박비	7,200	대표단(1인1실) 통역,인솔(2인1실) 120×6실×5박×2회=7,200
	식비	4,200	50×7명×6일×2회=4,200
	교통비	3,600	300×6일×2회=3,600
	항공료	2,800	200×7명×2회=2,800
	통역비	3,600	300×6일×2회=3,600
	기타경비	4,600	문화재 관람료 외
	ILO 총회참관및오스트리아노총방문(6박7일,20인)	88,000	
	항공료	40,000	왕복/이코노믹 2,000×20명=40,000
	숙박비	12,000	2인1실/2등급기준 200×6박×10실=12,000
	식비	12,000	100×6일×20명=12,000
	기타경비	24,000	교통비, 입장료, 통역비 등
자원봉사활동	소계	40,000	
	노사합동 농촌돕기 자원봉사계	20,400	
	식비	12,000	10×4식×300명=12,000
	교통비	8,000	500×2대×8회=8,000
	현수막	400	50×8회=400
	노사합동 시설방문 및 장애우 나들이 자원봉사계	11,400	
	식비	3,000	10×300명=3,000
	교통비	8,000	500×2대×8회=8,000
	현수막	400	50×8회=400
	노사합동 봉사활동 (장애우 행사 2014. 12. 24) 계	8,200	
	식비	4,500	중식 뷔페 30×150명=4,500
	현수막	50	실내용 1개
	공연비	2,500	마술공연, 산타공연 등
	기타경비	1,150	장애우 기념품 외
노사민정 워크숍	소계	12,000	
	숙박비	2,400	30×80명=2,400
	식비	4,000	50(1박2일)×80명=4,000
	강당사용료	600	300×2일=600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교통비	300	150×2일=300
	강사비	600	강사 2명
	인쇄비	1,000	자료인쇄 100권
	현수막	100	실내용 1개
	공동의류	2,800	35×80명=2,800
	기타경비	200	문구대 외
노사민정 체육 대회	소계	68,000	
	이벤트비	13,000	무대설치비 3,000 음향기기 설치비 3,000 진행강사비(주진행1/보조진행4 스텝도우미 10 인건비)=2,000 퍼포먼스 행사비(5명) =2,000 진행 준비물(기자재 및 소모용품비/특수 효과) =3,000
	참가품	40,000	40원×1,000개=40,000천원
	인쇄비	1,500	리플렛 제작비 1×1,000부=1,000 초청장제작비 1×200부=200 경품권 제작비 300원×1,000부=300
	식비	10,000	10×1,000명=10,000
	기타경비	3,500	우승트로피 외
장학금 지원 사업	소계	1,306,000	
	장학금	1,300,000	
	장학금 운영비	6,000	통신비 및 장학증서 발급비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비 1,5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 계		1,500,000	
정책연구사업	소계	200,000	
	사업장 및 노동조건 조사	120,000	연구용역 현장조사 보고서 1식
	의식주 등 생활실태 조사	80,000	연구용역 현장조사 보고서 1식
교육사업	소계	178,000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학교	45,000	10개지역×4,500천원=45,000천원
	노동인권교육	115,000	50회×2,300천원=115,000천원
	인권보수교육	18,000	*합숙교육=5,000천원×2회=10,000천원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인권보수교육=(강사비30만원+진행비5만원)×23회=8,000천원
인식개선 및	소계	120,000	
법률구조사업	노동자권리수첩(5만부)	70,000	노동자권리찾기수첩제작=70,000천원(5만부)
	법률지원센터 운영	50,000	민주노총 법률원등과 MOU 체결하여 법률 지원
비정규직노조활동보장사업	소계	50,000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노조활동보장(준비위 구성, 워크샵 등)	50,000	노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한 준비위 구성, 간담회, 워크샵 등 1식: 50,000천원
노동자 복지 지원 사업	소계	132,000	
	몸펴기(요가) 스트레칭	32,000	강사1일평균4시간, 시간당10만원*80일
	의료지원(300명)	100,000	50만원이내 * 300명
지역공동체 연계 사업	소계	20,000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20,000	리플렛및현수막 (25개구×100천원×8개=20,000천원)
장학 사업	소계	800,000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장학위원회)	800,000	지원기준 및 대상선발, 집행방법 (추후 세부내역 별도 제출)

자료: 서울시 노동정책과